

• •
국민과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순서

1.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2. 부정청탁 금지

3. 금품등 수수금지

4. 외부강의등 제한

5. 신고처리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탁금지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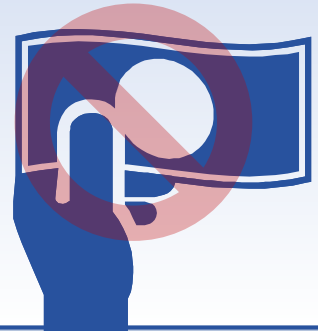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제정목적

공직자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적용대상

공직자등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민간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등의
배우자



일반국민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준용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구체적 적용대상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 임기제 공무원 • 공중보건 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 공무원 임용유예자
공직유관 단체	• 비상임 이사, 감사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용역업체 직원 • 공공기관자회사 임직원(공공기관 지정X)
언론사	• 인턴기자 등 단시간 근로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 방과후강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지정 전

참고 판례 (2021과30)

인정 사실



위반자는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바, 2016. 10. 12. C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50만원 수령. 재단법인 B는 2016년도 공직유관단체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7. 6. 30. 에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것이 고시됨

판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아직 지정 전이라면 공직유관단체가 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문언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반자의 2016. 10. 12자 외부강의등은 위반자가 아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하기 전의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그러나,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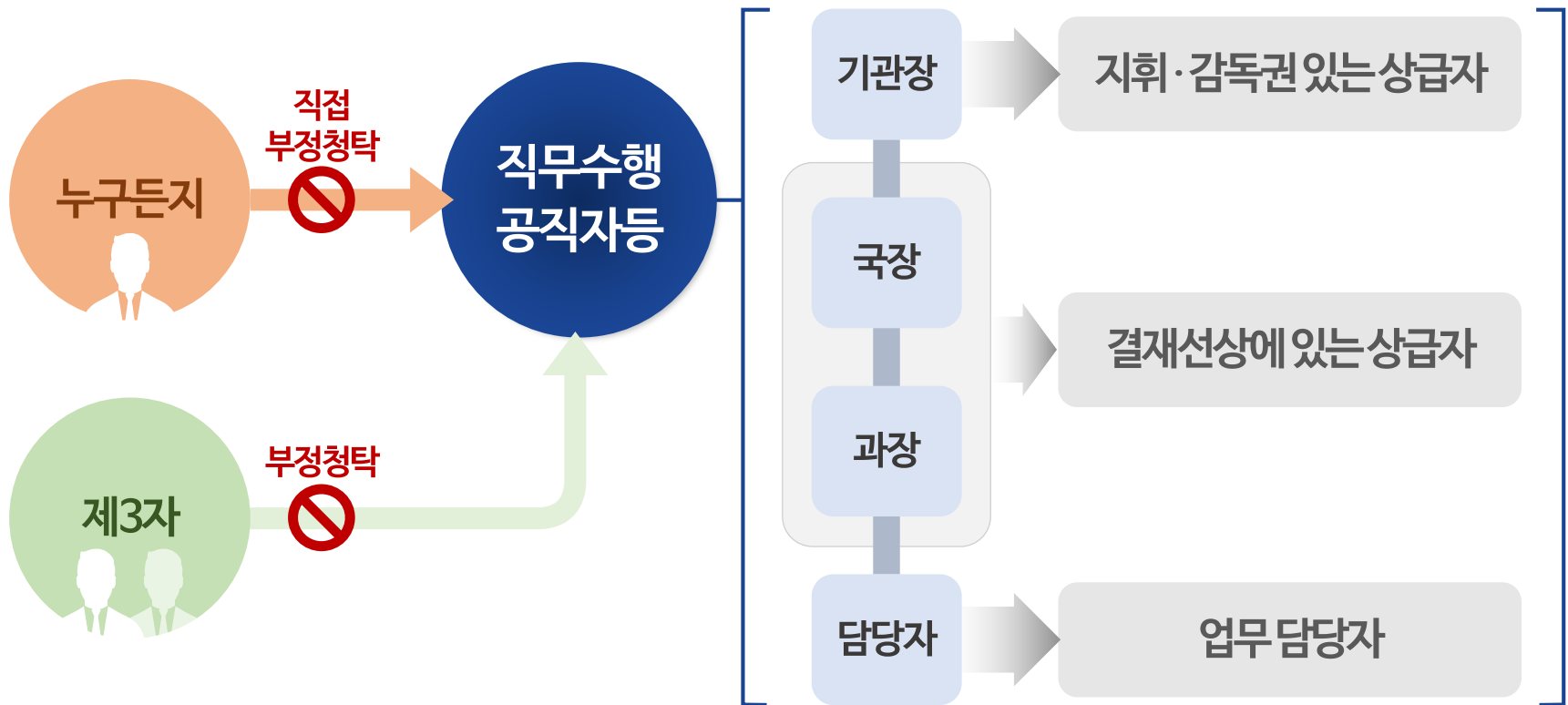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그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 훈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 법령의 범위

참고 판례 (2018과1303)

인정 사실



위반자들이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소속 기관 공직자들의 승진을 부탁하는 전화 통화나 문자 발송

판단



위반자들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원들을 통하여 승진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미공개 위원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악하여 승진을 부탁했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50만원 부과

참고 판례 (2018과157)

인정 사실



위반자가 2017. 7. 초순경 시청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에게 B가 ○○과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B는 2017. 7. 경 ○○과 ○○팀장으로 발령됨

판단



위반자가 제3자인 D를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1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3 모집 · 선발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개발 ·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10 입학·성적 ·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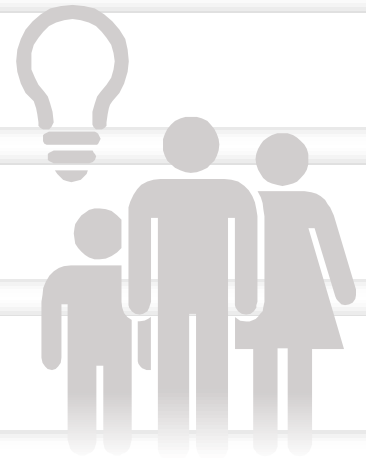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인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14 사건의 수사·재판 ·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일반 또는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인 지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이 신청한 허가·등록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단순히 허가·등록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를 한
것이라면, **제3자를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법 제5조제2항제4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 X
징계대상 O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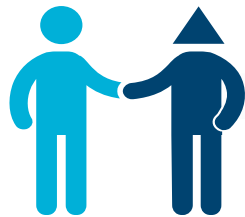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등이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신고 의무 공직자 기준)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 금지 | 개념도

● 민원인 A ▲ 친구 B ★ 친구 C ■ 담당공무원 P

허가가 날 수
있게 해 주게!



민원인 A

A 허가 신청 건
잘 좀 처리해 주게.



친구 B (일반인)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담당 공무원 P



친구 C (공직자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B: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C: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금지 | 대상직무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평가위원회에게 청탁하여
채용

제3호(채용.인사)

- 면접위원
벌금 300만원
- 부모
과태료 1,200만원

지방의원이 회계부서에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의 방제사업 구매
계약 체결을 청탁하여
수의계약

제7호(계약)

- 지방의원
과태료 1천5백만원

지방의원이
이용대상이 아님에도
교육청 수련원장에게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4일 동안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

제9호(공공기관 재화 및 용역)

- 지방의원
과태료 30만원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의 내용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채무면제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은 공공기관 직원 A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 B와 골프를 치면서 B의 회원 우대혜택(동반자 그린피 10만원 할인)을 받아도 되나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A는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점심**을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식사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 수수 1

참고 판례 (2019노4620)

인정 사실



피고인 A는 OO공사공사감독관이고 피고인 B는 OO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입해 달라고 하여 (1) 70만원 권 상품권 4장(합계 280만원)과 (2) 노트북 2대 및 프린터 1대(합계 198.8만원)을 제공받음

판단



피고인 A는 수수 금품 (1) 상품권 중 자신이 1장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상사인 항공대장과 동료 감독관에게 주었으므로, 수수한 금품은 70만원이라고 주장
이는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여 타인에게 넘겨준 상품권 3장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제외할 수 없음**

피고인 A가 제공받은 금품 (2)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수수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 시공사가 발주처 소속 공사감독관을 위해 공사현장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그 내부 집기류를 설치하여 제공하며, 공사가 완공된 뒤 시공사가 이를 회수하는 사례가 있고, 노트북 사용장소가 공사현장 사무실로 공사감독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됨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 수수 2

참고 판례 (2021과10135)

인정 사실



위반자는 B대학교 사회체육과 조교로서 2016.12.21.부터 2016.12.24.까지 **교외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버스(왕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음**

판단



위 비용은 B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B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반자가 위 상당액의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 가액 1

참고 판례 (2017과215)

인정 사실



위반자들은 시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들과 J조합 임직원들 22명으로서 함께 63만3천원 상당의 식사

판단



방에서는 의원들과 조합장 및 간부 16명 : 54만1천원(33,812원)
홀에서는 의원들 수행원과 J조합 팀장 등 6명 : 9만2천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이며,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에 과태료 7만원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 가액 2

참고 판례 (2019과228)

인정 사실



안전팀장 B, 안전용품 업체 개업 중비 중인 B의 지인 C, B와 C가 직무관련성 있는 위반자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A가 식사비 및 대리기사비 87,000원 부담

판단



위반자 A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은
58,000원(=87,000원 X 2/3, B 및 B가 임의 동행한 C에게 제공된 금액)이므로
과태료 120,000원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

1호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4호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호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 수수 금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제2호)

판단기준

수수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목적이 부정된 사례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상시 지도·평가 대상인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금품등 수수 금지 |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음식물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

선물 (5만원)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 물품 상품권(커피 기프트콘 등) 및 용역 상품권(공연관람권 등)**

경조사비 (5만원)

결혼과 장례에 한정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아님**

금품등 수수 금지 | 목적상의 제한

참고 판례 (2019과1630)

인정 사실



위반자는 B우체국건립공사의 시공자로서 해당공사감리원에게 2018.6.12 ~ 11.6. 기간동안 59회 802천원, 1인당약 7천원 등 총 64회, 총 1,138천원 제공

판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도, **수회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횟수, 빈도, 명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보임.

따라서 위반자에게 3,000천원의 과태료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 지체 없이 1

참고 판례 (2018과41)

인정 사실



OO공사직원A가직무관련자 B를 만나 식사한 후,
B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함

A는 “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5일 후에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B에게 반환

판단



반환의사는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고, 5일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7만원 부과**

*** 지체 없이 :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사유 종료 후 즉시**

금품등 수수 금지 | 지체 없이 2

참고 판례 (2016과418)

인정 사실



위반자는 B대학교 C캠퍼스 D과 교수로서, 2016. 10. 30. 장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원을 축의금을 받아 법정한도 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음

판단



비록 위반자가 법정한도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 11. 9.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2016. 11. 14. B대학교 경영평가실에서 위반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권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자의 자발적인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위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C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목요일 밤에 OO도의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개인별 금액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360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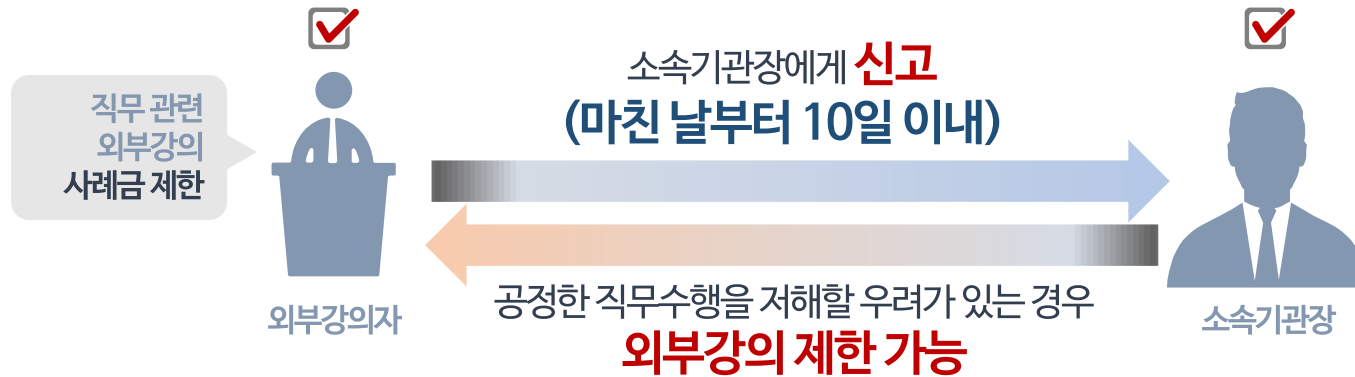
외부강의등 제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외부강의등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2.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회의 등
3. 강의 · 강연 · 기고 등



외부강의등 제한 | 구체적 사례

외부강의등 해당 사례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 · 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의결 등
-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 · 간담회 등의 좌장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신문 · 잡지에의 기고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시험문제 출제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언론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 1:1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 자문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외부강의등 제한 |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시 150%(60만원)까지 수수 가능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제한 | 1회의 강의 판단기준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주제)	각각 사례금 지급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다름	같은지 다른지 불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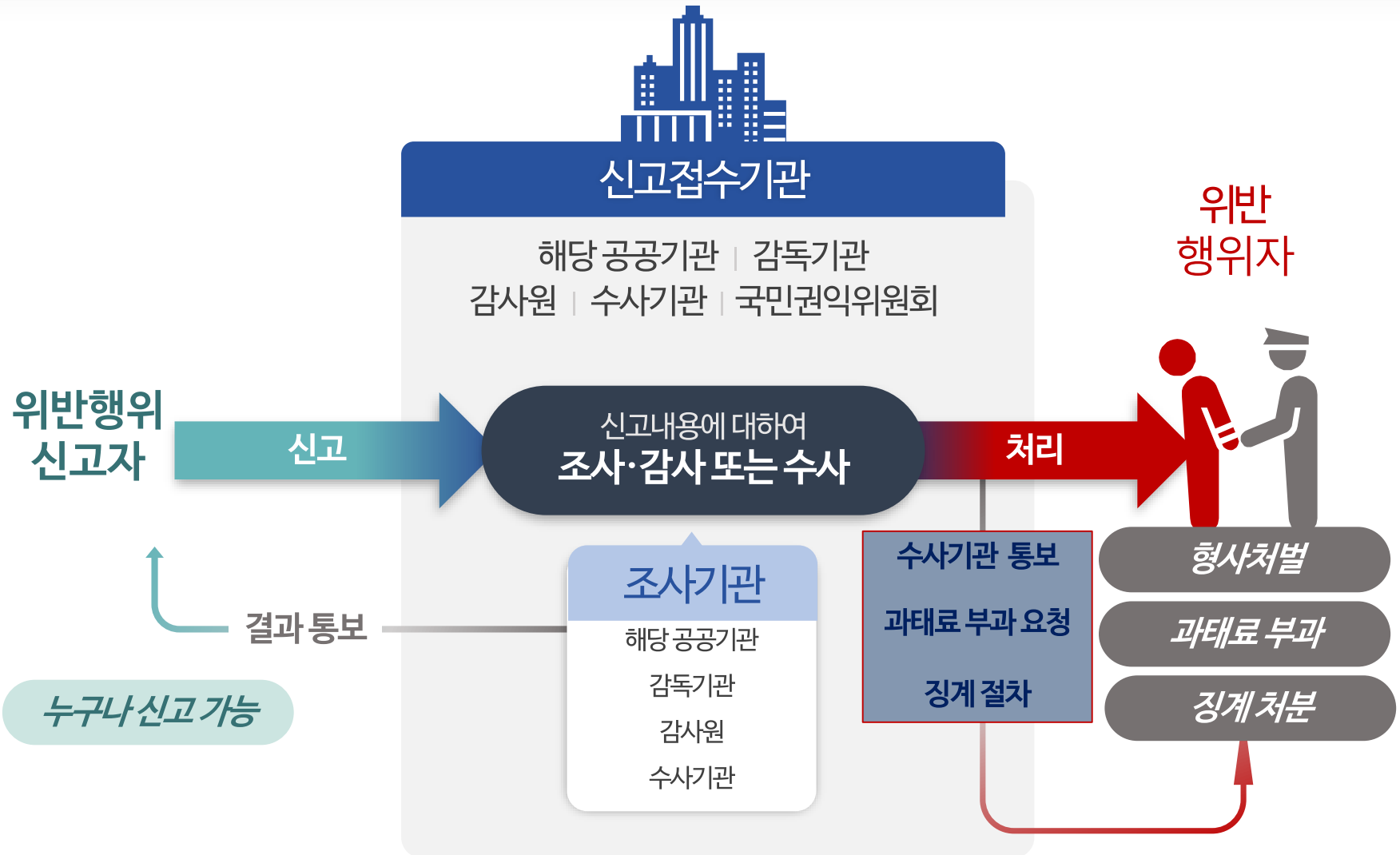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1회의 강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신고처리 유의사항 신고처리 개념도



신고처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참고 판례 (2021과6548)

인정 사실



00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00시 동구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2021. 8. 4. 00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통보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임.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외에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00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추후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신고처리 기소유예 처분과 과태료 부과 1

참고 판례 (2021과12476)

인정 사실



OO은행 B지점 과장이 직무관련이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직원 D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받은 후, 위 B지점의 여신거래업체인 (주)E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진행했고, 위반자는 위와 같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받은 금품이 소액이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을 받음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자가 이미 은행에서 상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수 받은 금품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리 기소유예 처분과 과태료 부과 2

참고 판례 (2020과1933)

인정 사실



위반자는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공무부장으로서 2018. 2. 2.경 공사감독관 C에게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판단



위반자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자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하지 않음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자체종결하는 사례 다수 발생

지자체 공무원이 우편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송부받자 자진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제공자를 과태료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 종결

양벌규정 미적용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 방
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도 제재해야 함에도 누락 종종 발생

공직자등이 A계약업체 직원 B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100만원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공직자등과 직원 B는 과태료 부과요청했으나, A계약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누락

참고 판례 (2017과5)

판단



① 위반자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 받고, ③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④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000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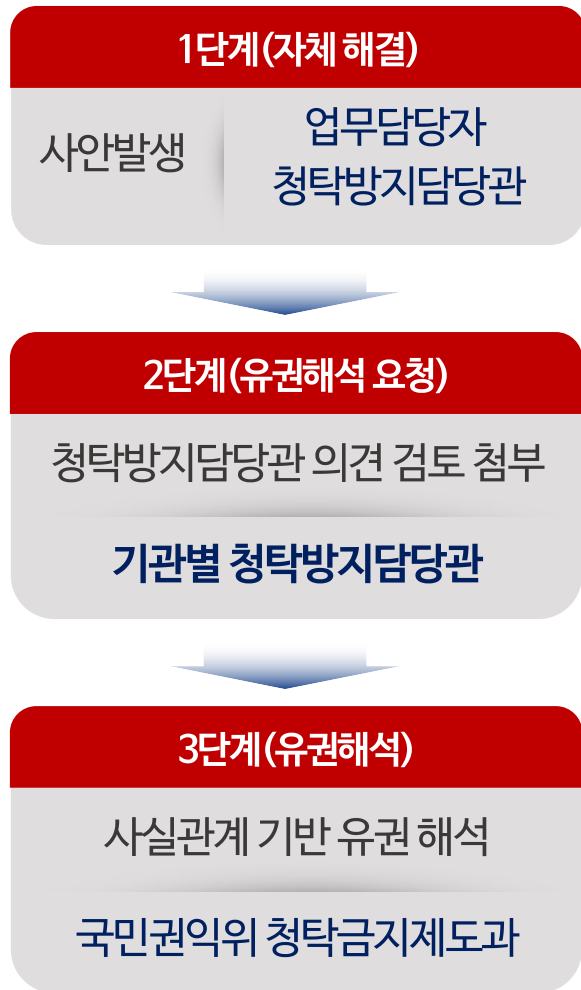
안내사항 | 상담 및 교육 활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부패방지 자료실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등록부서	등록일	조회수
257	상영·음보자료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		청탁금지제도과	2021-08-25	445
256	상영·음보자료	청탁금지법 제정 관련 설명회 자료(217월)		청탁금지제도과	2021-07-14	2669
255	상영·음보자료	청탁금지법 제정 관련 설명회 자료(217월)		청탁금지제도과	2021-06-23	4228
254	상영·음보자료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설명회 자료(217월)		청탁금지제도과	2021-01-14	4581
253	상영·음보자료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설명회 자료(2017월)		청탁금지제도과	2020-11-27	2029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포털) 우측하단 배너

안내사항 | 유권해석 요청 창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386호(2018.3.8.) 관련

000기관 유권해석 요청 서식(예시)		
☐ 현황 ☐ 개요 ☐ 구체적 사실관계 ※ 부정청탁(청탁자, 수탁자), 금품등(제공자, 수수자) 관련 세부적 사항		
☐ 질의 사항 ☐ 질의 내용 ※ 관련 규정 등 명시		
☐ 기관 의견 (청탁방지담당관 의견 필수)		
업무 담당 부서	청탁방지담당관	비 고
※ 의견에 대한 구체적 이유 명시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